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 18

제출연월일: 2006. 8.24.

제 출 자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의 제정·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).
- 나.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의 조직, 센터의 장의 선임 방법,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정함(안 제4조 내지 제7조).
- 다.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).
- 라.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3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및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합 의: 관련부서와 협의되었음.

다. 기 타

(I) 규제심사 : 규제신설·폐지 등 없음.

(2) 입법예고 : ob. b. 16~7. b / 접수의견 없음.

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전광역시 지원봉사활동 지원조례

- 제·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및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) ①대전광역시장(이하 시장"이라 한다)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원봉사발전위원 회(이하 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
 - 2.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협의·조정에 관한 사항
 - 3.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의 건의사항
 - 5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 - ②위원회는 위원장 I인을 포함하여 Io인 이상 I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
 - 2. 대학교수
 - 3. 대전광역시(이하 시"라 한다)·자치구 자원봉사협의회장
 - 4.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-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I인을 두되,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담당과장이 된다.
- ⑧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3조(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)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둔다.
- 제4조(센터의 조직) ①센터에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 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.
- 제5조(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 ①센터 장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한다. 다만,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시와 협의하여 운영주체인법인이 선임한다.
 - ②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- ③센터 장은 임기만료 1월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- 제6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 ①센터는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

-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2주 이상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,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·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- 제7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·예산집행·비품관리 등 전반적인 센터운영 상 황을 년 1회 이상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- 제8조(활동실적 관리 등) ①시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마일리지제(차원봉사마일리지제"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)를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제I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품앗이제(차원봉사 품앗이제"란 자원봉사자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활동실적 범위 안에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- 제9조(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) 시장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발급하고,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제10조(경력인정 등)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.
- 제11조(자원봉사단체의 지원)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2조(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) ①시장은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과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의 자원봉사활 동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시장은 시 지역안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자원봉사

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협력학교를 지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 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
- ③학생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은 시 지역안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우수 자원봉사학생에 대하여 관계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.
- 제13조(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) ①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해 등록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 - ②시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시장은 제I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센터 또는 단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매년 공고를 거쳐 가입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.
 -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모집된 자중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,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하고,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다.
- 제14조(실비지급 등)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자원봉사발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본다.
- ③(자원봉사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자원 봉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

- 제14조(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)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
 - 1.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 직한 자
 - 2. 자원봉사단체·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 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 - 3.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자
 - 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

□ 자원봉사활동기본법

- 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 다.
- ③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·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6년 11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

2. 회 부 일 자 : 2006년 8월 25일

3. 상 정 일 자: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제2차 행정자치위원회(2006.11.27)
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Ⅱ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국장 조찬호)

1. 제안이유

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의 제정·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2조).
- 나.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의 조직, 센터의 장의 선임 방법,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정함(안 제4조 내지 제7조).

다.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).

라.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3조).

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한봉전)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금년 2월 6일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○ 전부 개정 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조례 안 제1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 안 제2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한 위원회 규정을 두면서,

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조례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,

조례 안 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 안 검토결과

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개정 표준안을 참고하고,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과 동법 시행령에서 제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려 는 것으로써,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개정 표준안 중 법령에 중복된 내용은 최 대한 억제하고,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조문만을 반영하여 조례 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 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먼저,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제14조 제1항에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이 명문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,

조례 안 제5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민간위탁 법인이 센터 장을 선임하는 경우 시와 협의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민간위탁 법인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다음은 조례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,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해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이는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조치 등을 취하도록 한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제10조의 규정 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다만, 조례 안 제13조에서는

보험가입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(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) 과 자원봉사자에게 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 등에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(제1항 및 제2항)이 혼재되어 있어 조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혼동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Ⅳ. 토 론 요 지:생 략

V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Ⅵ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(내용별첨)

Ⅶ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 18

제안연월일: 2006. 12.

제 안 자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법인의 자원봉사지원센터 장 선임시 자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일부 조를 나누어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가 추구하고자하는 목적을 명확히 함(조례안 제1조).

- 나. 민간위탁법인의 자원봉사지원센터 장은 시와 협의없이 법인이 선임토록 함(조례안 제5조제1항).
- 나.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를 분리함(조례안 제13조 및 제14조).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안 제1조중 "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" 다음 "지역사회에 나 눔과 상부상조 문화 및 대전사랑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 발전 과"를 삽입한다.

조례안 제5조제1항 단서중 "시와 협의하여"를 삭제한다.

조례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보험료 등 지원) 시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조례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보험가입방법 및 절차) ①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해 등록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
-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센터 또는 단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매년 공고를 거쳐 가입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.
-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모집된 자중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,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하고,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다.

조례안 제14조를 제15조로,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

젔 아

및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,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 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다.

제5조(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

- ① 센터 장은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제 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한다. 다만,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와 협 의하여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.
- ② (생략)
- ③ (생략)

제13조(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)

- ①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「비영 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해 등록된 단체 소속 지원할 수 있다.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- ②시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센터 또는 단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매년 공고를 거쳐 가 입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.
-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모집된 자중 자 원봉사자의 활동내용,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하고. 보험사와 계약 을 체결한다.

제14조(실비지급 등) (생 략)

제15조(시행규칙) (생략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및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.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 하여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 및 대 전사랑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

- ① 센터 장은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제 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한다. 다만,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 체인 법인이 선임한다.
- ② (개정안과 같음)
- 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13조(보험료 등 지원) 시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

- 제14조(보험가입방법 및 절차) ①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」에 의해 등록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보호 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 -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센터 또는 단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매년 공고를 거쳐 가입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.
 -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모집된 자중 자 원봉사자의 활동내용,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하고. 보험사와 계약 을 체결한다.

제15조(실비지급 등) (개정안과 같음)

<u>제16조(시행규칙)</u> (개정안과 같음)